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2. 10 선고 2021가단347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창화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 13.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11.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

이 유

1) 소외 C(D생)은 2011. 5. 2.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400만 원(대출한도액: 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E는 2013. 6. 28.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C에 대한 잔존 원리금채권을 양도한 뒤 이를 C에게 통지하였으며, F는 2018. 10. 26. 원고에게 C에 대한 잔존 원리금채권을 양도한 뒤 이를 C에게 통지하였다(2018. 10. 11.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C의 미상환 원금채무액 잔액은 2,351,009원이다).

2) 한편, F는 2015. 1. 13. C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8092호로 양수금채권(위 2,351,009원의 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이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2015. 2.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3) C은 E로부터 위 대출을 받을 당시 그 대출이율을 연 36.5%로 약정하였는바, 위 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계산한 채권계산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C의 채무액은 총 9,551,697원(원금 2,351,009원 포함)에 달한다(2021. 5. 21. 기준).

1) 소외 G(H생)은 피고 B(I생)와 혼인하였고, 그 슬하에 자녀로 소외 J(장남 K생), 소외 L(차남, M생), 소외 C(3남, D생)을 두었다.

2) 한편, G은 1995. 5.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G(이하 '망인'으로 지칭한다)은 2020. 5. 4.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가 3/9 지분, 직계비속인 J, L, C이 각 2/9 지분씩의 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1)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20. 11. 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0. 1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2)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1) 사해행위 성립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 2020. 11. 4.)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이에 더하여, ① 민법 제406조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를 ‘법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문제일 뿐 법률행위의 성립시점 자체를 소급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 점, ③ 민법 제1015조 후문은 상속재산의 분할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법률행위의 성립시점과 효력 발생시점이 상이한 데서 발생하게 되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④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경우,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재산(잠정적 공유상태인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할 의도로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포기하는 방식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을 사실상 조장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 사해행위 성립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은 실제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성립된 날이라 할 것이다.2) 피보전채권의 존재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E(최초 양도인)의 C에 대한 금전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있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E로부터 전전양수한 위 금전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C은 E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관련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8092)을 통해 인정된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무려 연 36.5%에 달하는바, C이 위와 같은 고율의 채무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에게 이를 변제할 충분한 자금능력이 없었음을 방증한다.나)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N기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2019. 1. 1.부터 2021. 9. 9.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부동산도 자신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또 C이 2020. 11. 4. 당시 다른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 결국, C이 2020. 11. 4.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망인의 상속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또 C은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1)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은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2)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이 변제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도 다투고 있으나, 권리소멸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피고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C의 상속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그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2/9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민

별지

(1동의 건물의 표시)

구미시 O에 있는 P동

[도로명주소] 구미시 Q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구미시 O 대 27,805.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3층 R호

철근콘크리트조 46.8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7,805.5분의 27.45. 끝.

